KiRi 리포트 2017.11.6.
이슈 분석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발생하는 상해 · 사망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현재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견종을 법으로 정하고 이들 견종을 소유하는 견주들에게 맹견(猛犬)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맹견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을 견주에게 구상(求償)하는 보험으로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효과적이고 견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정부와 국회는 효과적인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등록제 의무화 이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 ·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반려견 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 건수는 2011년 245건, 2015년 1,488건, 2016년 1,019건, 2017년(8월 기준) 1,046건으로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 변화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음[1)]
  -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 2010년 17.4%, 2012년 17.9%, 2015년 21.8%
  -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이 반려동물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됨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전체의 30.9%) 중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 비중은 각각 82.5%, 16.6%로 반려동물 중 대부분이 반려견임[2)]
- 반려견 수의 빠른 증가로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 7. 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2) 황원경(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 『KB연구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참조

정부와 국회가 반려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음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음[3]
  - 반려견으로 인한 대인사고(상해 · 사망 사고) 발생 시 견주 처벌 근거 규정 마련, 맹견[4]에 포함되는 견종 확대, 목줄 · 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인상, 신고 포상제 등
- 현재 국회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표 1〉 참조)

〈표 1〉 반려견 관리 강화 관련 법 개정 추진 내용

법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연월일	주요 내용
동물보호법	2009951	정병국 의원	2017. 10. 27	맹견 소유자의 교육 의무화, 모든 지역에서 맹견의 등록 의무화,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 출입 금지
동물보호법	2009789	주호영 의원	2017. 9. 29	맹견에 대한 정의 명확화, 국가 · 지자체 동물복지 · 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맹견에 관한 사항 포함 의무화, 맹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시 소유자 동행 의무화, 외출 시 목줄 · 입마개 의무화, 벌칙 및 과태료
동물보호법	2008945	주승용 의원	2017. 9. 1	맹견 관리의무 강화,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기관 출입 제한, 처벌 규정
동물보호법	8128	장제원 의원	2017. 7. 21	맹견의 정의 및 관리, 맹견의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대인사고를 유발한 맹견에 대한 조치(격리 등), 맹견 소유자 안전교육, 벌칙 등

주: 발의연월일의 역순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참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반려동물보험[5]이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견주 가입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고 반려동물보험은 가입률과 보상한도가 낮음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1억 원의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으나 견주 가입 현황이 조사된 바가 없고 반려동물보험의 경우 계약 건수가 적고 보상한도가 낮아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음
  - 2015년 현재 1억 원 한도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건수는 192만 건이고 보험료 총액은 34억 원 수준인데 이에 대한 견

3) 농림축산식품부 긴급브리핑(2017. 10. 23),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4)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맹견을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및 이들의 잡종, 그리고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개정 이후 맹견에 포함되는 견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5) '애견보험'이라 불리기도 함

주의 가입률 통계가 부재함[6]

- 50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책임 보상한도를 제공하는 반려동물보험의 경우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2천여 건의 보험 계약이 존재함[7]

현재 미국에서 39개 주와 많은 지자체가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법으로 정하고 이들 견종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맹견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8]

- Walden(2012)에 따르면 현재 미국 39개 주와 지자체들이 맹견관리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400~500만 명의 미국인이 개에 물리고 이들 중 약 80만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아동 개물림 사고가 아동의 응급실 입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미국 대다수 주들이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견주에게 맹견 등록과 맹견보증보험 또는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9]
- 미국 일부 주의 맹견보증보험·맹견배상책임보험 최소 의무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음
  - 워싱턴 주: 25만 달러(2억 7천 5백만 원),[10] 조지아 주: 1.5만 달러(1,650만 원),[11] 펜실베이니아 주: 5만 달러(5,500만 원),[12] 앨라배마 주: 10만 달러(1억 천만 원),[13] 미네소타 주: 30만 달러(3억 3천만 원)[14]

맹견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견주에게 구상(求償)하는 보험임

- 맹견보증보험을 구입한 견주의 반려견이 대인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험회사는 신속히 피해자에게

---

6)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장기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통계는 보험개발원『손해보험통계연보 2016』참조. 계약 건수와 보험료는 경과계약건수 경과보험료 기준, 통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1년간 1억 원을 한도로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담보함

7) 일부 반려동물보험은 손해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김세중·김석영(2017. 8. 21),「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KiRi 리포트』, 포커스, 보험연구원 참조

8) Walden(2015), "Brief Overview of Dangerous Dog Laws", Report,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Smith(2012), "Dangerous Dog Laws and Posting Surety Bonds", Report, BuySurety 참조

9) Smith(2012) 참조

10) 1달러를 1,100원으로 환산(이하 동일).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RCW 16.08.080 Dangerous dogs

11) 2010 Georgia Code, TITLE 4 - ANIMALS, CHAPTER 8 - DOGS, ARTICLE 2 - DANGEROUS DOG CONTROL § 4-8-25 - Requirements for possessing dangerous or potentially dangerous dog

12) Pennsylvania Statutes and Consolidated Statutes. Title 3. Agriculture. Chapter 8. Dogs. Dog Law

13) Alabama House Bill 231

14) Minnesota Regulations 347.50, Regulation of Dangerous Dogs

보험금을 지급함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견주에게 구상[15]함

〈그림 1〉 맹견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 및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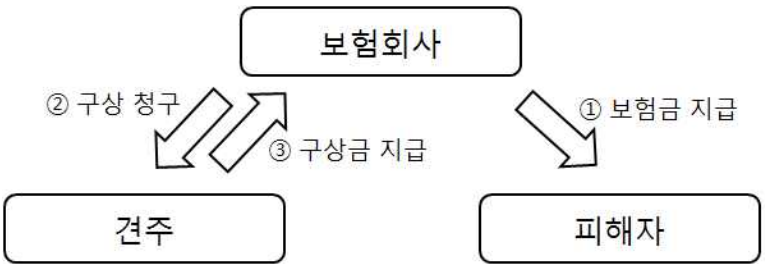

맹견보증보험은 신속한 피해자 구제, 도덕적 해이 발생 억제, 저렴한 보험료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맹견보증보험의 경우 견주가 손해배상 능력이 부족해 충분히 피해를 보상할 수 없을 시에도 보험회사가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함
- 맹견보증보험 보험금이 지급될 시 보험회사가 견주에게 손해를 구상하므로 견주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음(〈그림 1〉, 〈표 2〉 참조)
- 맹견보증보험의 보험료는 견주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구상금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보다 저렴함(〈표 2〉 참조)

〈표 2〉 맹견보증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차이

보험 구분	견주에 대한 구상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보험요율 산출 방법
맹견보증보험	있음	없음	예상손해배상액+소송비용+마진+사업비−예상구상금
배상책임보험	없음	있음	예상손해배상액+구상비용+마진+사업비

보험회사는 미국 맹견보증보험 사례를 고려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맹견보증보험 개발·판매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맹견 견주의 맹견보증보험 가입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맹견보증보험

15) 보험회사가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 개발·판매된 사례가 없음

- 인터넷 채널을 통한 맹견보증보험 판매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16)]
  - 인터넷 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완화되어 인터넷을 통한 맹견보증보험 판매가 가능함
  - 인터넷 채널을 통한 맹견보증보험 판매로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음

정부와 국회는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무 등록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당국과 국회는 맹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의무 등록제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위험관리를 위해 미국과 같이 등록제 이행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 등록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되었으나 2016년 말 현재 등록 동물 수는 107만 마리로 전체 800만 마리(추정)의 13.3%만 등록되어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맹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사각이 존재함 KiRi

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2. 4), "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 참조